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3.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48호로 2015년 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가에 못 미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봉투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일가격으로 현실화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종량제 수수료 예산 편입 근거 규정 마련(안 제26조제1항)

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현실화
- 2차에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제13조제4항 관련 안 별표1)

다. 인상된 규격봉투 가격 적용시기 규정(안 부칙)
-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2015년”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폐기물의 처리 등)
-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타구제정 : 금천구

(입법예고 등 진행 중 : 종로구, 강동구, 구로구, 양천구, 송파구)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행 1)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고 원가에 못 미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일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불투명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견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생활쓰레기 목표량을 2013년 대비 올해 10% 내년 20%씩 폐기물 감량의무 할당량을 부여하는 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 시설 반입 할당제를 시행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줄이기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1) '독립채산제'란 대행업체가 종량제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배출자, 배출량, 수수료에 대해 구청에 보고하는 비용지불방식임.

우리구는 그간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약 94,000톤 처리를 위해 89억원(인건비 제외)의 예산을 지출하였으나 현재 낮은 봉투 가격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분리 배출 필요성이 저조하고 주민부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구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임.

-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예산총계주의 원칙), 같은 법 제34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독립채산제를 폐지하여 규격봉투 판매대금을 구 예산에 세입 조치하고,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규격 봉투 가격을 5ℓ 기준 현재 90원을 2015년에는 120원, 2017년에는 130원으로 2단계에 거쳐 인상하는 안이며 조례에 선반영하여 시기 도래시 자동 인상토록 하여 2017년도까지 25개 자치구의 종량제 수수료를 단일화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한 2)주민부담률은 현재 59.6%에서 '17년까지 83%로 예상된다.

2) 주민부담률 : 2015년 현재 59.6%, 2015년 인상 후 76.8%, 2017년 83%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독립채산제를 폐지하여 수수료 수입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량제 봉투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화 촉진 및 구 재정 부담의 완화와 청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2015년도 세입예산에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50억 6,000만원이 기 편성됨.

- 향후 재활용품의 배출 체계 개선의 노력과 수수료 인상 및 폐기물 감량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환경부 폐지권고, 법제처 유권해석

-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으로 업체 운영비 충당)가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인건비 수준 등과 관련 있어 폐지권고(’13.2.1. 환경부)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수집·운반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위반(’14.4.2. 법제처 유권해석)